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하남시장(정보통신담당관)

제출일 : 2021. 7.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 수정 및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
 - (현행)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 (개정) 하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 나. 상위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안 제1조~제15조)
- 다.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4조)
- 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상위법을 인용하여 명확히 규정(안 제6조)
- 마. 정보자원의 관리 운영에 대한 조항 정비(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는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마련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